의안 번호	110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10.27.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6.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2027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관계법령

가. 「창원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다.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라.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 주요내용

대상기관	사업건수	위탁·대행 예정 규모	비 고
창원산업진흥원	9개 사업	3,27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개 사업	48백만원	
KOTRA	1개 사업	100백만원	

○ 2027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안)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위탁·대행 기 간	위탁·대행 예 정 액	수탁·대행 공공기관
계		11개 사업		3,418	3개 기관
	지역 경제과	소계	2027	2,470	
1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400	창원산업 진흥원
2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600	
3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250	
4		중소기업 역량강화 (Scale-up) 지원사업		100	
5		창원기업 국책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		120	
	일자리 창출과	소계	2027	248	
1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200	창원산업 진흥원
2		중장년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48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투자 유치단	소계	2027	700	
1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00	창원산업 진흥원
2		수출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300	
3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00	
4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100	KOTRA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2027년도 위탁·대행 계획은 지역경제과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5건(2,470백만 원), 일자리창출과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등 2건(248백만 원), 투자유치단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건(700백만 원), 총 3개 부서 11건 3,418백만 원을 (재)창원산업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동의안(2개 부서 11건, 3,580백만 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같고 금액은 162백만 원(4.5%) 감소하였음.

○ 수탁·대행기관별로는 (재)창원산업진흥원이 9건 3,270백만 원(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건 48백만 원, KOTRA 1건 100백만 원임.

○ 창원기업 국책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 중장년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2027년 신규 사업이며, 나머지 8개 사업은 기존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임.

○ 공공위탁 조례 제4조[1]는 2024. 12. 20. 개정으로, 위탁·대행 기간

1)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위탁·대행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 7. (생략)

8.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위탁·대행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만료 등으로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와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적정성 검토 사항(제8호)으로 추가하였음. 그러나 동의안의 적정성 검토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기재되어 있어 계속 위탁 사업 7건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

- 특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026. 9. 16.)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정산기한 미준수, 전자문서 임의 수정, 행사 대행 용역 부적격업체 계약 등 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적정성 검토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2027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수탁·대행기관	2026년	2027년	증감
1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창원산업진흥원	700	1,400	700(100%)
2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300	600	300(100%)
3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50	250	200(400%)
4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100	100	-
5	창원기업 국책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	120	신규
6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창원산업진흥원	-	200	-
7	중장년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8	신규
8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230	200	△30(△13%)
9	수출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창원산업진흥원	250	300	50(20%)
1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창원산업진흥원	245	100	△145(△59.2%)
11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KOTRA	-	100	신규

※ 2026년은 동의안의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내역' 중 최종 예산액 기준

○ 사업별로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이 각각 전년 대비 2배,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5배로 대폭 증액된 반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59.2%,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13.0% 감액되었으므로, 증액 사업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감액 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공위탁 조례 제8조제4항제2호[2]는 동의를 받은 후 위탁·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년도 동의 금액과 동의안에 제시된 2026년 최종 예산액을 비교하면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150 → 100백만 원),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지원사업(350 → 245백만 원, 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은 30% 이상 감액되었으므로 재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27년도에도 예산 심의 결과 동의 금액과 확정 예산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2. 위탁·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대행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1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 지역경제과

○ 본 사업은 창원형 강소기업 신규 발굴·육성(8개사), 기 선정된 강소기업 137개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12개사), 앵커기업 육성(4개사), 창원강소기업협의회 운영 등 네트워크 지원(8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은 1,400백만 원(시비)이며 이 중 민간사업지원금이 1,180백만 원(84.3%)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7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지원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사업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6. 연구개발(R&D) 사업 및 기업 요구 기술 인력 지원사업 7. 강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미래전략 사업기획, 전략산업 육성방안 마련, 자문위원단 운용 나. 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공모사업 지원 다. 기업 매출신장을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라. 경영성과 평가관리 및 대외 협력 업무 처리 마. 그 밖에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관리 2.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 나. 지원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재단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으로,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오면서 창원형 강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 예산은 2022~2023년 1,400백만 원에서 2024년 600백만 원으로 축소된 후 2027년에 다시 1,400백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 심사(2025. 12. 2.)에서 선정 기준과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앵커기업 육성 등 신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매출・고용・수출 등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 본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단기 컨설팅(150개사, 최대 900천 원), 중기 컨설팅(15개사, 최대 3,000천 원), 1단계 완료기업 대상 사업화 연계 지원(18개사, 최대 18,000천 원)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600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약 80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애로기술단을 운영하며 2024년 113건의 현장애로를 지원하는 등 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측면에서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의안은 추진 근거로 진흥원 설립 조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업 지원의 직접 근거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책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 본 사업은 중소기업 ESG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6개사), ESG 관련 ISO 인증 취득 지원(10개사), 제조현장 개선(현장안전 개선형 5개사, 스마트 안전관리형 7개사) 등 총 28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250백만 원(시비)이며, 전년도 50백만 원 대비 5배 증액되었음.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진단, 전략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컨설팅 중심의 기존 사업을 인증 취득과 제조현장 개선까지 확대하는 것은 2025. 10. 21. 동의안 심사 시 ESG 경영과 현장 안전을 연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조현장 개선(바닥 도장, 안전 센서 구축 등)은 기업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으로,「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 각 호 중 제4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근거하게 되므로, 기업 자부담 비율과 중복 지원 제한 등 지원 기준을 사업계획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④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권리화 및 선행기술조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38건)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15개사)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100백만 원(시비)으로 2023년 300백만 원에서 2027년 100백만 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다년간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⑤ 창원기업 국책과제 유치 및 산업전환 지원사업 - 지역경제과

○ 본 사업은 2027년 신규사업으로, 국책과제 참여 경험은 있으나 선정 실적이 저조한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평가 대응을 지원(트랙1, 5개사)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과제 발굴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R&D 과제 발굴·기획을 지원(트랙2, 5개사)하는 것으로, 예산은 120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호 나목은 재단의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공모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정부공모사업 지원 및 기업 R&D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위탁 조례 제8조제1항[3] 단서에 따라 최초 위탁·대행 사무로서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위탁·대행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10개사 지원에 인건비가 33.2백만 원(27.7%)으로 비중이 높고 신규 사업인 만큼, 과제 선정률·수주 금액 등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산업진흥원이 기존 수행 중인 정부공모사업 지원 기능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⑥ 창원시 일자리 종합박람회 - 일자리창출과

○ 본 사업은 2026년까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2027년부터 창원시 단독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기업 현장채용관(직접참여 70개사, 간접참가 50개사), 취업지원관, 홍보관 및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2027년 5월 개최할 예정임. 총사업비는 200백만 원(시비)이며, 이 중 행사운영비는 190백만 원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있음.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가기업 모집과 채용수요 조사에 강점이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진흥원이 행사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장 조성·운영 등을 추진할 경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행사 대행 용역 부적격업체 계약’ 사례를 고려하여 대행사 선정의 적격성 검증과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면접 및 실제 채용 인원 등 채용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⑦ 중장년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과

○ 본 사업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을 1년차에 시가 지원(2년차 중진공, 3년차 기업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은 48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로 동의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과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음.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수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 가입·적립금 관리·만기금 지급 등 공제 운영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A)’(2023·2024년 실적), ‘양호(B)’(2025년 실적)로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협약 체결 근거이므로 재정지원 근거로서 같은 조례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대상은 최대 200명이나 예산은 근로자 납입금 20만 원 선택 시 100명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 가입 구성에 따라 예산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공제 적립기간(3년)이 위탁기간(1년)보다 길고 분담 방식도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협약 체결 후 연차별 재정 부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8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투자유치단

○ 본 사업은 종전 ‘수출지원 표준화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 해외 민간네트워크 연계 바이어 발굴, 온라인 마케팅 등 53건을 지원하며, 예산은 200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3조
제3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매년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기업의 성과를 3년간 추적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검토 시 수출지원사업 간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번에 사업명 변경과 매출액 기

준 지원단계 폐지 등 사업 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예산이 2022년 670백만 원에서 2027년 200백만 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감소에 따른 지원기업 수 축소가 지적된 만큼, 사업 개편 효과와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⑨ 수출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 투자유치단

○ 본 사업은 종전 ‘산업별 맞춤형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참여기업 수출역량진단(20개사), 타깃 시장 해외 공동관(2개국) 및 사절단(1개국) 파견(20개사), 기업별 맞춤형 개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며, 예산은 300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2025년 공동관·사절단 3회 추진으로 수출상담 65,929천 불, 계약추진 39,465천 불, MOU 23건, 실계약 6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사절단 파견과 KOTRA에 위탁하는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사업-11)은 해외 현지 바이어 상담이라는 기능이 유사하므로, 파견 지역과 참여 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

⑩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투자유치단

○ 본 사업은 종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국화축제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단체초청 수출상담회(40개사, 70백만 원)와 수출 복합애로를 해결하는 수출현장 닥터(10개사, 30백만 원)로 구성되며, 예산은 100백만 원(시비)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7조에 있음.

○ 수탁기관인 (재)창원산업진흥원은 2025년 글로벌 비즈센터와 연계하여 3개국 12개사의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 53,923천 불, 계약추진 16,103천 불의 성과를 거두는 등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어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이 2026년 245백만 원에서 100백만 원으로 59.2% 감액되었으므로 초청 바이어 규모 축소에 따른 성과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⑪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 투자유치단

○ 본 사업은 기존 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추진해 온 수출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시장개척단 단일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임. 관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를 미국 디트로이트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 1:1 상담과 공급망 진입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100백만 원(시비)이며 이 중 위탁수수료가 9,091천 원(10%), 인솔경비가 8,267천 원임.

○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있음.

○ 수탁기관인 KOTRA(경남지원본부)는 북미 지역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매칭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위탁·대행 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공공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대행 기간 3년 이내를 충족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업당 지원 규모가 약 12.5백만 원으로 큰 편이고 수출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절단 파견과 기능이 유사한 만큼, 참여기업 선정 기준과 계약 추진 실적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11건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계속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조례 제4조제8호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적정성 검토에 반영하고, 예산이 동의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8조제4항에 따른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진흥원과 KOTRA가 각각 수행하는 수출 지원사업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고, 대폭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따른 점검·관리가 필요할 것임.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